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교기업 설치 · 운영규정

제정 2005. 4. 1. 개정 2010. 8. 30. 개정 2013. 3. 7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 및 학교 기업의설치·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우리 대학교" 라 한다) 학교기업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8.30>

제2조 (명칭 등) 우리 대학교에 두는 학교기업의 명칭, 소재지, 사업종목 및 연계학과는 별표와 같다.

제3조 (설치) ①학교기업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·운영계획(이하 "운영계획 등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산학협력단장(이하 "단장"이라 한다)에게 설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- 1. 학교기업 소재지
- 2. 사업종목 및 연계 학부·학과
- 3. 담당 직원 현황
- 4. 재정투자계획
- 5. 대응투자 확보계획
- 6. 수익창출계획
- 7. 보상금 지급기준
- 8. 시설·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
- 9. 기타 학교기업 육성 · 발전계획 등
- ②학교기업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운영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대학 홈페이지, 대학 신문, 공청회 등을 이용하여 교직원, 학생 등 학교 구성원 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- ③단장은 운영계획 등을 검토한 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규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

- 아야 한다. <개정 2010.8.30>
- 제4조 (조직) ①학교기업의 대표는 총장이 되며, 단장에게 학교기업의 관리·감 독권을 위임할 수 있다.
 - ②학교기업에는 학교기업의 장을 두고, 학교기업의 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- ③학교기업의 장은 학교기업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④학교기업의 하부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5조 (지원 조직 등) ①우리 대학교에 학교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직에는 학교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.
 - ③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에게 학교기업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- 제6조 (설치·운영비 지출범위) 우리 대학교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 (학생등록금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 포함)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건비, 운영·관리비, 현장실습비, 시설·장비 구입비, 시설·장비 유지보수비 등을 학교기업의 설치·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. 다만,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아니한다.
 - 1.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학교기업의 수
 - 2. 학교기업 관련 학부·학과수
 - 3. 학교기업 관련 직원 및 학생수
- 제7조 (현장실습 산업체의 선정) ①학교기업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.
 - ②학교기업의 시설·장비, 교육훈련프로그램, 인적구성, 실습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현장실습 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.
- 제8조 (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학점) ①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30학점까지 인정하되, 학기당 인정 학점은 15학점 이내로 한다.
 - ②현장실습의 학점단위는 1학점당 30시간으로 한다.
 - ③기타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산업체현장실습규정에 의한다. <개정 2010.8.30>
- 제9조 (예산) 학교기업의 장은 관계법령에 의거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

행하여야 한다.

- 제10조 (회계처리) ①학교기업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 - ②학교기업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등은 대차대조표 · 운영계산서 등으로 한다.
 -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등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.
- 제11조 (보상금 지급기준) ①학교기업의 운영 결과,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이익의 50% 범위 내에서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 지급액은 순이익의 5% 이내로 한다.
 - ③학생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은 장학금으로 지급하되,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이내로 한다.
 - ④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,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직무 발명규정에 의한다. <개정 2010.8.30>
- 제12조 (감사) 학교기업에 대한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회계감사 시 포함하여 실 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.
- 제13조 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제2조 (타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산업대학교학교기업설 치·운영지침은 폐지한다.

부 칙 (제 631호, 2010.08.30)

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교명변경에 따른 일괄개정)

[별표] 학교기업의 명칭 등

명칭	소재지	사업종목	연계학과
서울과학기술대학 교캡스톤디자인학교 기업	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172번지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교지 내	○ 강기조화장치 제조업 ○ 기기용 자동측정 및	○기계설계·자동화 공학부 ○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○금형설계학과